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1. 8.(월) 총 3매(본문2, 첨부 1)	
담당부서 녹색건축과	담당자	• 과장 송시화, 사무관 박덕준, 주무관 김진성 • ☎ (044) 201-3768, 4094, 3771	
보도일시	2018년 1월 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높이고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늘린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...에너지 소비 총량제 평가 대상 확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 및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단열성능 강화,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('18. 9. 1)한다.
 -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으로,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개정·공포됐다.
-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(외벽, 최상층 지붕, 최하층 바닥, 창 및 문) 단열기준을 선진국(독일)의 패시브 건축물* 수준으로 강화했다.
 - *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난방(액티브)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
- 또한,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(중부, 남부, 제주)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(중부 1, 중부 2, 남부, 제주)으로 세분화함으로써,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.

□ 또한,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까지 확대*하여,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.


*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통해 건축 허가시 에너지 소요량을 예측함으로써,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건축주 및 설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에너지 소요량 상세 정보(난방·냉방·급탕·조명·환기 소요 에너지)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

○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·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*하여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전체 조명설비 중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 기준을 강화(만점 기준 30% → 90%)하되 기본 배점을 추가 부여(4점 → 6점)하여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 설치 확대 유도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·설계사·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, 기준 해설서 제작·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” 라며,

○ “이번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, 국가 전력수요 저감,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덕준 사무관(☎ 044-201-40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□ 제도개요

- 건축물 건축시 에너지절약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(건축·기계·전기 및 신재생에너지)을 의무·권장사항으로 규정*

*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881호, 2017.12.28

- 연면적의 합계 5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의무·권장사항을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,

- 허가권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 준수 및 권장사항의 평점합계 점수*가 65점(공공건축물 74점) 이상임을 확인하고 허가

* EPI(에너지성능지표; Energy Performance Index) :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평가, 건축허가 여부 결정

□ 관련근거
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(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)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(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)
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(에너지 절약계획서 등)

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세부 검토항목

- (의무사항) 건축, 기계, 전기부문의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할 사항을 규정

* (건축) 부위별 단열기준 준수 및 방습층 설치, 방풍구조 등

* (기계) 냉·난방설비 용량계산, 펌프효율, 배관·덕트의 보온 준수 등

* (전기) 고효율변압기·대기전력장치·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등

- (권장사항) 건축, 기계, 전기,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대한 가점 적용

* (건축) 외피 평균열관류율, 열교저감, 기밀성 창 및 문, 차양장치 등

* (기계) 냉·난방설비의 효율, 폐열회수형 환기장치,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등

* (전기) 조명밀도, BEMS, 조명 자동제어설비, LED 조명기기 등

* (신재생) 난방·냉방·급탕부하 및 전기용량에 대한 신·재생에너지 용량 비율